

제42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기획재정부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통계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기획재정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기획재정부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통계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기획재정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각 기관별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고 심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유병서 예산실장님이 어저께 내년도 예산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차장이 없는 청들 거기는 청장이 오는 걸로 돼 있지요? 차장이 없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제가 기재위원님들한테 들은 거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기금을 돌려막기로 쓰기로 한 거에 대한 조치 문제하고 예비비 문제 두 가지니까 다른 것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12분)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소관이고요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총괄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용자산 현황 및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항목인데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정부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있어서 박스를 보시면 국가채무가 1175.2조에서 적자성 채무는 815.4조 원, 금융성 채무는 359.8조 원인데 금융성 채무를 정부는 대용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체 상환 가능한 채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외환시장안정용이 210조고 서민주거안정용이 79조, 기타 금융성이 66.4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타 금융성 채무가 66.4조인데 이 66.4조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회계나 기금인데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공자기금의 예수금으로 받은 기금과 특별회계 25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당초부터 대응자산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 다른 분류에 따라서 기타 금융성 채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응자산 여부를 보면 상당 부분 대응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할 때 채권 발행하는 채무인데 이 채무의 대응자산으로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대응자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대응자산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납입액은 대응자산 성격이 아니라 국민들이 청약저축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상환해야 될 돈이지 채무에 상환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응자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에도, 박스에 2023년도의 경우를 보면 채무는 251조인데 대응자산 규모는 200조로 50조 이상 대응자산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대응자산은 대부분 외환보유고기 때문에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비춰 볼 때 시정요구사항은 맨 마지막 2페이지 하단에 있다시피 기재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돼 있고 실제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차시 효과를 불러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게 맞는데 용어상 금융성 채무라는 단어가 국민의 부담이 없는 채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념 정비 등을 통해서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 왜 애초에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재정정책국장님이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국장입니다.

03년도에,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때는 재무제표나 재무결산이 들어와 있지 않은 개념인데 차익금과 외평채하고는 좀 다른 채무다라는 개념하에…… 왜냐하면 발행을 하지만 자산을 가진다라는 생각에서 금융성 채무를 그때 당시에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재무제표가 들어왔을 때 이 개념에 부합하는 거는 순채무라는 개념에 있

습니다. 정부의 자산 중에서 요구불처럼 바로 상환이 가능한 것을 전체 채무에서 빼는 개념인데 당시에는 그런 점에 착안을 했지만 재무결산이나 이런 게 염밀하지 않아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관리를 해 왔던 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거는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이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코멘트만 하면 분류의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건 이해를 했고요.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국가채무 총량에 대해서, 대개 수치에 대한 또는 전체 비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가채무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로 국가채무 이렇게 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채무 안에서도 좀 더 부담이 큰 게 있고 부담이 덜한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잘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안을 잘 마련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 채무의 성질에 대한 국회도,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류를 안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건 재정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참 봤었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좀 해서…… 빚은 빚인데 이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빚이고 이거는 어떻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마인드가 안 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어떤 정부는 많이 잡고 어떤 정부는 적게 잡고 자꾸 이렇게 해 가는, 비교를 단순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재편을,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러면 이건 받아서 시정하는 결로 하고.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이유는 정부에서 그걸 분류하는 기준이나 내역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게 2004년부터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국회에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걸러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위원장 정일영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래서 여기 할 때 그 기준하고 그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병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시정안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표기하시고.

○박홍근 위원 이게 감사원 권고도 있었으니까, 거기에도 보면 절차 수립 그다음에 집계 방안 마련 이렇게 감사원의 권고 사항이 놓였네요, 보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기준이나 분류에 이런 걸 같이 당연히 정리해서 줘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자, 빨리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꾸자꾸 설명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빨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면 설명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두 번째, 지금 4대 연금기금 중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은 자산하고 부채를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상태표에서.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기금은 자산은 인식하고 있는데 연금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아서 순자산이 과다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하고 사학연금기금은 공무원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와 교환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 자산에 넣어야 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 기금의 자산 규모를 제외했을 때는 국가 순자산이 -473조 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의 순자산 과다 인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자산 규모를 별도로 표기하거나 동 자산 규모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를 별도로 표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적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방안,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규모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 표기’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나머지 앞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별도 표기하는 걸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별도 표기.

○김태년 위원 시정요구사항이 둘 중의 하나……

○소위원장 정일영 둘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별도 표기하는 걸로 시정하는 걸로.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페이지입니다.

기재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에 대부분 출장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서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 면담에 대한 증빙이 알 수 없거나 결과보고서를 보고 국외출장 실시 목적 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한 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하여는 책임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

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처음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관리 강화를 해 보고 다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별자에 대한 주의는 이번에 감안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 이야기예요, 국외출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1년에 몇 회 나갔어요, 2024년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80건 정도 나가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280건? 꽤 많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렇게 내용이 없는 건 그중에 10건 정도입니다, 이런 증빙이 약한 부분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를 빼고 제도개선 시정요구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앞부분에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이게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침을 주고 제도개선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제도개선하는 걸로 하지요, 시정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페이지입니다.

세수결손 대응 부적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인데요. 23년 결산 시 국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는데,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서 2024년도도 23년도와 같이 대응을 반복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24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해서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차규근 위원은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서 추경 편성하지 않고 국회 심의 우회해서 대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해서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5년 2회 추경 편성 사례를 감안해서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시에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등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차 추경 할 때 여러 번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앞으로 국회와 더 소통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기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차규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관련 담당자 징계 부분은 저희가 삭제

를 요청하고 앞부분에 있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세수결손 이따 기금 할 때 이게 또 나옵니까? 이게 공자하고 외평기금을 돌려막기로 썼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공자하고 외평 할 때 또 나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또 나오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이것은 세수결손 대응 총괄적인 것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줘야 된다라는 게 위원님들 이야기이고. 그거지요, 이 페이지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이게 총괄 부분이고요. 외평기금은 외평기금을 당겨쓴 것에 대해서 또 시정요구사항이 나오고……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알겠어요.

내가 우리 기재 위원님들한테 아침에도 듣고 했는데 이것 대단히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2023년·2024년 합해 가지고 90조 세수결손인데 첫째는 세수 예측을, 기재부에서 그 모델을 잘 만든다고 몇 번 약속하고 안 지켰거든. 그래서 결손 나게 만들었는데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전에 보면 공자기금에서 4조, 외평에서 4조~6조, 주택기금 어저께 내가 얘기했는데 그건 일단 제치고. 그리고 교부세 배정해서 6조 5000억도 안 주고 그 교부세 빼먹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매우 심각한 2024년도 결산인데, 2023년도 건 아니더라도 2024년만 점검, 챙겨 봐도 기재부에서 이건 매우 잘못한, 징계·주의까지도 가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큰 판단하에서 잘못 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큰 틀 속에서 움직인 책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우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력을 연말에 해서 국회가 예산편성·심의를 해서 이렇게 의결을 해 준 건데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예산을 막 줄이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예산, 각각의 사업 항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정부가 편성권이 있다고 그렇게 해 온 방식…… 이건 제가 봐도 지적받아 마땅한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에도 당연히 지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등을 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와 소통, 동의의 과정 이걸 좀 더 충실히 해 주셔야 마땅한 것 같고요.

하나는 질문인데 당시 세수결손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해야 될 것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그랬잖아요. 실제 얼마가 갔어야 했는데 얼마 미루고 얼마가 간 겁니까, 기간과 금액이? 교부금 다 간 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못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할 거냐 그다음에 할 거냐, 결국에는 다 정산되는 건데……

○**박홍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시기별로는, 제가 현재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실장님, 혹시 세수 예측은 어느 파트에서 해요? 예산실에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세제실에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홍근 위원** 아니, 예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교부 문제는……

○**소위원장 정일영** 교부금 문제는 예산실이고?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숫자는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교부세는 최종적으로 74% 정도 감액이 됐고요. 교부금은 100% 감액이 됐었고요. 24년도에는 교부세는 50%, 교부금은 75% 정도 당해 연도에 감액이 됐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감액된 게 나중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액되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감액된 것은 실제로 세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 이건 전체 세수가 적어서 거기에 상응해서 감액됐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액을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그 당시에 50%만 감액했던 것은 다음 해나 그다음 해, 차차년도까지 해서 추가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은 이것은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정책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감액하느냐, 결국에는 감액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교부금, 교부세 다 확 줄어 버리니까…… 우리 지역인 인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김태년 위원** 지금 설명은 세금이 덜 걷혀서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설명입니다.

○**박홍근 위원** 여기에 따라서 변동되어 있으니까, 연동 설계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런데 세제실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제대로 안 살리니까 세금이 덜 걷힌 거고.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당연히 세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국세에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교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방에 가야 될 것은 다 교부는 된 겁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정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산액으로 들어온 세금액을 갖고 그 법에 나와 있는 비율만큼 딱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22년도에는 초과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로 더 줬고요. 23, 24는 덜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당해 연도에 일부하고 최종적인 결산치를 갖고 차차년도까지 다 감액을 해서 100% 정산을 하는 걸로……

○**박홍근 위원** 그래서 다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24년도 것은 내년 예산에 교부금, 교육세 쪽은 감액이 추

가가 있습니다. 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이 당해 연도에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안 돼서 더 추가 감액한다고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김태년 위원 징계만 수용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징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건 빨리해도 되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김태년 위원 뒤에 가서 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뒤에 가서 결정합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징계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뒤에 가서, 일단 넘어가고 기금까지 다 보고 정하시지요.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기조실을 비롯한 10개 실·국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업추비로 지급해야 될 식대를 임차료에 포함해서 지급을 함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사실은 업추비로 사용하면 50만 원 이상에는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되는데 임차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증빙을 남기지 않은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로 업추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업추비가 증액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임차료를 통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이런 사항입니다. 회의도 하고 그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식당 장소를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이것 전체를 다 임차료로 계산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임차료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 식사 부분 업추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앞부분 ‘기획재정부는 업추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 이 부분은 외부에 공개될 때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뒷부분에 있는 제도개선 사항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게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 고의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쓴 돈이 총 2555만 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임차료 2555만 원 중에……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게 몇 건이에요? 많이 그랬네. 이것 아주 부도덕한…… 이건 징계감인데……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운영할 때 한 번에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한 삼사십 건 됩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실에서 그랬어요? 어디가……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개의 실·국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골고루 했구나.
- 이인선 위원** 보통 임차를 하면 임차 안에 식대가 포함돼서 계산을 하게 하는 임차도 있고 별도로 해도 되는데 딱 갈라서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해 버려서 이렇게 된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임차료로 했다는 겁니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갈라서 해야 되거든요. 임차한 부분은 임차료로, 식대는 업추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임차료로 묶어 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박홍근 위원님.
- 박홍근 위원** 사실 이건 예산 집행지침을 만드는 기재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 소위원장 정일영** 부끄러운 일이에요.
- 박홍근 위원** 아주 기본을 스스로 어겨 놓고 다른 부처에다 이걸 지키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정일영** 징계감이에요, 이 경우는.
- 김태년 위원** 호텔 비즈니스룸 빼고 임차료와 식사를 같이, 만약에 식당이면 임차료가 없을 거고. 그렇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회의를 같이 진행한 겁니다, 간담회 같은 것.
-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는 이제……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식당에서 회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식비를 내는 거지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
- 박홍근 위원** 그렇게 우리는 약간 추측된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호텔이건 어디건 식당을 빌려 놓고 그걸 간담회나 회의라고 해 놓고 식사료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그걸 결국은 임차료 형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별도로 내는 회의 장소가 호텔의 비즈니스룸 말고 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달개비라는 곳에서……
- 김태년 위원** 달개비가 임차료가 따로 있나?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할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밥 먹는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 박홍근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 김태년 위원** 밥 먹으면 그냥 빌려주지 않아?
- 소위원장 정일영** 빌려주는데요, 뭐.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임차료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 박성훈 위원** 방을 빌리는 거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방을 빌린 거라고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박성훈 위원 륨을 빌리다 보니까 식비가 아니라 임차료로 카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임차료로 저희가 한 겁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순수하게 방만 빌리면 그건 임차료 나가는 건데 달개비는 밥 먹으러 가면 그 공간 쓸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식대지 그게 임차료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으로 그걸 구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매우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인 거예요, 엘리트 기재부에서.

○김태년 위원 이것 안 밝히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누구누구 밥 먹……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싼 것 먹어도 숨겨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500명 가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장은 전체를 빌리면 식비가 다 같이 들어가 버리는데 식비를 포함한 임차료가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는데 희한하게 해 놨네.

전부 달개비예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성훈 위원 제가 보니까 달개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임차료하고 식사비가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냥 임차료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달개비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 경우는 식대로 계산을 해야지.

○박홍근 위원 업추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김태년 위원 아니지. 이름 안 밝히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이것.

○이인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식대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식사는 그것보다 오버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김태년 위원 징계까지는 과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징계는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뒷부분에 제도개선은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앞부분에 있는……

○소위원장 정일영 여기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 워딩은 삭제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투명성 훼손’ 그것까지라도……

○소위원장 정일영 나머지는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페이지 기조실 소관입니다.

기조실 일반회계인데요.

지적사항은 1년에 한 번씩 기재부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데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놀이공원, 빌마사지숍, 동물원 등에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어디에다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이 나오고요. 이러한 집행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조하데이’라고 조직 내 소통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관람이라든가 영화관, 캠핑 체험 등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의 목적과 달리 국가 예산을 쓰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에 사용했다는 부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원데이 행사나 조하데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발마사지숍이나 에버랜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이게 가족들도 같이했나? 그것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원데이나 조하데이가,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때 가족들 케어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 일일 체험을 같이하자, 워라밸 제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이게 업무랑 무관하냐, 저희는 진짜 업무랑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저희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조하데이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조하데이는 부서 간의 융합을 위해서 이 과랑 저 과랑 같이 모여 가지고 단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취지상으로 저희는……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네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정말……

○**김태년 위원** 가족과의 행사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건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인선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그게 표기가 안 돼서 그랬는데, 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하자 안 하면 누가 옵니까, 가족들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됐나요? 앞에 내용 설명 없이 이렇게 있으면 정부 돈으로 발마사지를 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박성훈 위원** 2024년 원데이 행사 때 참석 인원이 가족까지 포함해서 몇 명 정도……

○**이인선 위원** 참여 된 직원은……

○**기획재정부인사과 박상우** 박상우 조직팀장입니다.

일단 분기별로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참석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가족 포함이요?

○**기획재정부인사과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하급 직원들 한 번씩은 돌아가겠네, 분기별로 하면?

○기획재정부인사과 박상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쟁률 높은 것은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게 설계해 놨습니다.

○김태년 위원 필요하네, 필요해.

○이인선 위원 필요하네. 반응은 좋았다는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답지 않게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다……

이건 철회.

○이인선 위원 예,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박홍근 위원 임이자 위원장님을 책임지고 설득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혼자라서 설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불용률, 일반연구비 불용률이 좀 높다는 문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청년 인턴들이 중간에 빨리 나가서 그런 건데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잘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관 파견자에 대해서 임차료나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사실 6명분에 대해서만 확정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9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추가분 파견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이인선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님은 기재부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서 파견인원을 증원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은 기획재정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계획 수립에 정확성을 제고해서 사업 수행의 애로 및 예산 편성·집행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단순하게 완전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초기 복귀한 사람 몇 명 카운트를 잘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찍 귀임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생긴 사례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인사상의 사항이 생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뒷부분에 예산심의권 침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서 앞부분에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에 비해서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 주시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심의권 침해까지, 큰 건 아니고 최소 어떻게……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제도개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서에는 분명히 6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9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된 것과 다르게 집행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분명히 6명입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그런 것 잘하라고 그래서 시정요구하면 되고.

○박홍근 위원 시정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박홍근 위원 기재부가 앞엣것 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타 부서가 다 보고 있잖아요, 타 부처가. 더 격무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저희가 알겠는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면 불신들만 커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는 되게 꼼꼼하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취지는 개별사업 부서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제 중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중복되는 의심 연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연구개발 용역비를 편성할 시 개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연구개발사업에 통합 편성해서 중복 연구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사업에 다른 실·국 용역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복된 연구용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제목상

으로 보면 비슷해 보인다 싶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다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핏 제목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부터는 제목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세분화해 가지고 이런 유사성과 중복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 잘못 붙여서 생긴 문제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목을 좀 브로드(broad)하게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이것 비슷한 것 아니야라고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어렵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안에는 보면 또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개선이 어렵겠다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하되 말씀하신 대로 편성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적의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제목의 구체화, 세분화 등을 포함해서 유사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이 연구용역이 유사성·중복성이 없다 또는 적다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실제 다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제목을 바꾸나 안 바꾸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제목을 얼핏 보셔도 다르게 끔 하겠다는……

○김태년 위원 실제 내용이 그런 거라면 제목을……

○이인선 위원 제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

○김태년 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건데, 실제로 차관님이 보시기에 다릅니까, 확실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다릅니다.

○김태년 위원 다르다는데요.

○박성훈 위원 차관님, 기재부 내부 자체적으로 이런 중복이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기조실에서 하실 때, 제가 보면 이런 오해를…… 외부에서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중복 용역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부내역,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부기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방법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한 19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9억이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 전부인가요, 총액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24년도에 한 12개가량

을 했다는 건가요?

○**이인선 위원** 여기 일부만 있는 거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 정책연구개발사업이 19억이고요. 나머지 실·국에 또 연구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사업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카운팅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용역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박홍근 위원** 용역을 주로 어디다 줍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용역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수의를 하거나 그렇게…… 아이템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용역의 결과물이 실제 정책 반영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복의 문제도 있을 건데 효율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정부가 소위 여러 가지 문서를 생산해 내잖아요. 이 연구용역에 기초해서 대부분 만들어 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으면, 함부로 하기 어려울 때는 이걸 받아서 그걸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박홍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관행에 따라서 계속 줘서 결과를 받아서 그게 효율이 없다면 사실은 자주 가는 그 기관은 먹이사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재부 안에서 어떤 제목을 갖고, 아까처럼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됐는지에 대한 추적도 조금은 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이번에 국정기획위 하면서 그냥 가외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데는 부처가 그냥 대기업한테 ‘한번 좀 써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연구소들한테. 그걸 가지고 약간 고쳐 가지고 정부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런 건 비용을 주고 하는 만큼 더 공신력이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웰리티라든가 나중에 실제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는 얼마큼 그 성과가 평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건 기조실에서 대부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용역인지, 그 용역의 결과가 실제 어떤 식으로 성과로 반영되는지 이걸 다 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규제 같은 것 예를 들면 기업 규모별 규제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의 어떤 규제들이 다 차별화됐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상조 이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국가첨단전략 분야에 규제가 또 뭐가 있는지, 이게 각 과마다 해당되는 어떤 과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용역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규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다 그러면 이건 지금 국무조정실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경제 분야 규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제 분야는 여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완벽하게 딱 무 자르듯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부처에다 위임된 게 있고요. 저희도 해결 못 하면 국조실 가고요. 사회 분야 규제는 바로 국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건 너무 오래……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설명서도 가져오시고, 다시 한번 봐야 될 테니까요.

○**이인선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나중에 이 연구개발 효과성에…… 국정기획위에 보면 이번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연구개발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기관하고 결과, 너무 복잡하니까 다 가져오시지 말고 한 2장으로 정리해 갖고 나한테 좀 보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 문구를 이런 중복 사례가 안 나타나게 하고 용역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제도개선하는 걸로 하고요.

차관님, 어차피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 받고 있잖아요. 그때 감사원에서 또 한 번 우리 것 참고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테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실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페이지, 예산실 소관 1번입니다.

24년도 수시배정 사업 중에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수시배정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24년 총 수시배정 사업은 124개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은 73개로 그 비율이 58.9%로 과다하고 수시배정 대상액 중에서 실제 배정률도 국회 증액 사업 배정률이 전체 사업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국회 증액 사업 중에서 전액 미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 수시배정 과다 문제 및 전액 미배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수시배정 내역 및 사유를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박성훈 위원님은 뭐 특별한 말씀……

○**박성훈 위원** 저는 정부에 있을 때 수시배정이 필요하다라고 봤었고요. 가끔씩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수시배정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다만 국회 차원에서 보면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기재부가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2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20년부터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국제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전액 불용한 바 있습니다. 19년에 MOU를 체결하면서 MOU에서 피터슨 연구소와 매년 5개의 연구보고서와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하였는데 동 사업은 24년도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협력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조기 종료 사유 그다음에 신규 협력기관을 또 선정했는지 여부,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가 국제재정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편성·결산 시 국제재정협력기관 선정 사유나 협력 내용,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 자세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수용하신다니까……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했어요? 국내에 여러 가지 연구소들도 있는데 국내의 기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해외 연구소하고 당초에 계약을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국제재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국내도 있지만 해외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반적인 재정 동향을 같이 보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해외하고의 비교인데 한국 재정정책 연구보고서가 5년 동안인 거잖아요. 해외하고 물론 비교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해외의 여러 사례와 기준을 가지고 한국 재정정책을 본다 이런 취지인가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국제협력사업은 OECD랑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럽 쪽은 그쪽하고 주로 하고 아마 미국 쪽도 재정 관련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미국 쪽의 동향 이런 것 연구도 필요해서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24년에 조기 종료하고 25년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조기 종료했어요? 성과가 별로였던 모양이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한 연구소랑만 계속하는 것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OECD 쪽하고 해서, OECD가 미국도 일부 커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12페이지 사항은 부대의견이 아니라 정태호 의원실에

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부대의견으로 저희한테 잘못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요.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실은 지침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연말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집중하여 집행지침 위반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업추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과 두 번째는 업추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제도개선으로요.

이인선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번입니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부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24년 28억 중 22억을 집행하고 5억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규모 세수결손이라든가 24년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 지자체 교부금 재원 부족 등을 야기하였던바 최근 5년간 연간 동 사업으로 20억~30억 규모의 예산을 소모한 것에 비해서 재정운용 성과가 매우 낮아서 사실상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동 사업과 관계된 장관, 차관, 예산실장, 총괄심의관, 과장 등 책임자가 동 사업의 3개년 치 국고 낭비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변상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은 예산안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법상

의무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아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규모 세수결손이나 R&D 삭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이걸 이유로 앞에 있는 법상 의무사항인 회의에 대한 비용을 다 변상하라는 건 저희가 볼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정요구사항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이 얘기한 건 얼마예요? 22억 1100만 원, 3년치면 대충 60억. 60억을 다 편성하라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장관, 차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한 10억씩이 되네?

의견들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도개선으로 바꾸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문구를, 예를 들면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인선 위원 이것 자체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방재정협의회 이게 돈이 많이 드나? 변상은 곤란하겠고……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그것도 맞아요.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변상 조치까지 이어지게 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데도 앞으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다 거딜 나겠네.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의견 없으실 것 같고.

6번 예비비.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배정 세부내역만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재부는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 문구에서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 문구를 좀 다듬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이것 미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기재위에서 작년에 수없이 지적했거든요. 첫째는 예비비 사용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출장, 쌈짓돈 쓰듯이 막 써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냐하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해라. 둘째,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셋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나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임해 달라.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걸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예비비는 이렇게 1년 지나고 다 사용한 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위해서 총괄명세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위원님들 다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나 모르겠네요. 왜 이걸 하나 가져왔는지 몰라. 소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배부를 해야지, 이걸 만들어서 숨겨놓고 뭐 하려고.

우리가 심의하는 기재부 예비비사용조서에 보면 국가안전보장활동 해 가지고 대통령 결재일이 2024년 2월 27일 날로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거든요.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이게 국정원에서 쓰는 돈 같은데 작년 2월 27일 날 대통령 결재 한 번 하고, 국정원이 작년에 분명히 한 번만 쓰지는 않았거든요. 작년에 12월 달 비상계엄 전후로도 돈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러면 대통령 결재가 2월 27일 작년 연초에 한 번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 승인 요청하는 자료도 조금 더 내용 있게 다른 사항들은, 특히 국정원 관련되는 건 자세히 적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들은 좀 성의 있게 국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관해서는 그냥 다 국회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심의할 수 없도록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태는 정말로 안 맞는다.

국정원 예산도 국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사실은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몇천억씩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다. 그것도 좀 투명하게, 정보위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예산 따로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예비비에다 넣어 놓고

예비비에서 그냥 수시로 빼다가 쓰면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물론 정부에서 체크는 한다고 하지만 이걸 기재부의 예비비로다가 넣어놓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들 한번 말씀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차관님, 혹시 예비비 제도 개선방안 이런 것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 해서 예비비 내역은 앞으로는 공개를 할 거고요. 반기별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장 관련된 경비 부분은 사실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바꿔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법에는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정보위에서 심사한 건 예결위에서 심사한 걸로 갈음하게, 일단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바꿔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사이버안보 대응 경비도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실장님의 내용 잘 모르세요? 이것도 국정원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따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이건 기밀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그 부분에서 예비비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의결할 때 거의 대강의 총액으로 결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행에 대해서는 소위 국회의 사후승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억측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게 더 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도개선 얘기한 것처럼 이걸 사후승인,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연도 중반 지나서 보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상세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절차 거쳤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예비비와 관련해서 그래도 총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니 만큼 집행에 대한 상세하면서도 주기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위 안보활동 관련된 예산 부분이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예결위와 정보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서…… 대신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시스템을 만들되 다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국회가 깜깜이로 계속 이렇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늘 매번 누가 오든지 간에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이게 뭐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재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 그래서 기재위 의견을 받아서 예결위와 정보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부에서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지원 이건 전부 얼마인 거예요, 이

예산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5억 1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썼습니까? 사용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용했어요, 기재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부 썼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데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이것도 9억을 쓰고 10억은 불용이에요?

내가 회의 시작할 때부터 나눠 드리라고 했는데 왜 안 나눠 드려요, 이 책? 보세요,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책도 있길래 제가 뺏은 거예요. 나도 안 주더라고. 예비비 승인 요청하면서 이 자료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박성훈 위원 실장님, 저 총괄명세서는 누구에게 배부를……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국회에 다 제출한 거지요, 저희가 책자를 찍어서.

○박성훈 위원 다 제출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지금 심의……

○박성훈 위원 비공개 자료가 아닌 거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공개 자료입니다. 국회에 결산서랑 같이 낸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공개 자료예요. 그런데 안 가져왔어요. 저도 저기 위에 있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위원님들 드리라니까 왜 안 드려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저희가 따로 책자를 준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 다 제출했던 서류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좀 가져오지. 국회 어디 가서 찾아와야 돼, 이걸?

아무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예비비 19억을 지출 결정했는데 9억 쓰고 10억은 불용이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순방 가실 때 보통 프레스센터를 같이 설치하거든요. 그건 문광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예비비로 쓴 건데……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원래 예산이 있고요, 순방이 좀 많아지면 대통령 순방 비용도 그렇지만 외교부에 있고 프레스센터 설치는 문화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계속 쓰다가 순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기정예산이 다 소진이 될 때쯤 되면 예비비로 해서 프레스센터는 문화부에 들어가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있던 예산 다 쓰고 1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케이 해 줬는데 결국은 9억만 쓰고 10억은 남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그렇습니다. 불용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우주항공청 신설 이것도 91억이나……

아무튼 제가 계속 예비비 얘기하는 건 정부 각 기관에서 10억만 예산 확보하려고 그래도 예산실 가서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한 열 번 가서 설명해서 어렵게 따는데 예비비는 예산실에서 그냥 배정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되면 끝,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사실 예비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의 액수로 한 꼭지가 들어가는 건, 정부 예산서에는 2만 개 이상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사실 국무회의 올라갈 때 1건 아니면 많아야 3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목도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강도 높게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물론 불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예비비는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와서 징계나 주의 줄 수도 없고……

부대의견으로 붙였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예비비 기준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시에 국회에 수시로 보고,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이든 어쨌든 보고해야 된다, 투명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등등 이걸 부대의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게 부대의견은 아니고요, 정태호 의원실에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왔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일단 그 의견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저희가 워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홍근 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사후보고와 관련해서 그 주기와 내용, 수준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예비비 전체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정부는 국회가 하면 동의한다고 아까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건 정부한테 우리가 권고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뭔가 정리를 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 또 소관 상임위하고의 협의 과정 이걸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는지를 말씀 나눠 보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를 원칙에 맞게 쓰고 필요시 국회에 보고한다, 투명하게 한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고 주기라든가 예비비 구성된 법 개정 사항은, 사실 예비비 관련해서 법안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용명세서나 그런 걸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소위에서 그 사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개정안을 다 모아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재정법 개정할 때 그렇게 하는……

○**소위원장 정일영** 그걸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기재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제가 보고할 때 한 패러그래프로 해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박홍근 위원 공식화시키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건의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경제재정소위에 건의한다, 법안소위에……

○소위원장 정일영 의견으로 전체 그렇게…… 아까 박홍근 위원님 얘기한 그건 좀 더 법 개정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상임위까지 관련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알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는 거 좋고 내용 좀 다듬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추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이라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내역’이라고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방지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게 그 기관에 대한 부분만 딱 국한되니까, 그렇게 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요. 안 그러면 대통령 관련된 건 다 포괄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어떠십니까?

○김태년 위원 거기서 필요할 때 신청해서 받아 가나요, 이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배정 계획 총액은 전년도의 정보위를 통해서 총액을 정하고요, 분기별로 배정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배정 계획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액수가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실장님,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작년 2월 27일 날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결재한 내용의 분기별 집행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제가 어떤 내용까지 결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가요? 여기 보면 대통령 결재가 한 번 되어 있거든. 그런데 작년 2월 27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아마 그 분기 계획을 한꺼번에 다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작년 국무회의에 올린 거는 기재부에서 올렸을 텐데 한 번 올렸어요? 그 국정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비비는 나누어서 올리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이거,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이 예비비, 3550만 원.

○김태년 위원 그건 분기별로 나누어서 간다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분기별로 네 번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무회의도?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저희가 배정 계획은 전년도에 총 배정 계획을 한 번 올리고요, 예비비는 매번 해서 네 번을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 올렸으면 국무회의 네 번 통과됐고 네 번 국무회의 통과됐다면 대통령 결재가 네 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대통령 결재가 한 번만 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비비 통과한 거는 그때그때 재가를 네 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돼 있네요. 이 자료만 보면 2월 27일 한 번 대통령 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뭐가 있거나, 이상해서 자꾸…… 왜냐하면 작년에 아까 얘기한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인가 그때 국정원 예비비가 사용됐거든, 제가 볼 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대통령 결재가 좀 이상해서 저희가 자꾸 말하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소위원장 정일영 예, 확인하고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보좌관들 나간 상태에서 말씀하실 거 하십시오. 그렇게 이건 대충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요.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위원장님, 제가 지금 봤는데요. 대통령 결재일이라고 죽써 있는 것 중에 2월, 3월, 5월, 8월……

○소위원장 정일영 이 책자 31쪽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거기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그 밑에 첨단산업기술 유출, 그러니까 투자협력단을 제외한 4건은 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국가안전보장 경비입니다. 이름만 조금, 제목만 좀 다른 것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결재를 네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이버 안보……

○소위원장 정일영 12월 3일, 제가 얘기한 비상계엄 그때, 이게 마지막 그 결재군요. 좋습니다, 이해가 되네.

이 법안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 진도를 좀 나가고.

위원님들, 예산실장님 또 내년 예산 등등 해서 바쁠 것도 같은데 오전에 조금 더 하고 12시쯤에 점심 정회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실장님이 설명할 게 있으면 잠깐 하시고 예산실장님은 들어가시면 어때요?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예비비 관련되는 거나 추가로 또 예산실장님한테…… 예산실장님이 12시까지만 계시는 걸로 하고 가시기 전에 예산실장님한테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예산실장님, 차관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내용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같은 건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추가적으로요?

○**박성훈 위원** 예.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필요한 건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김태년 위원** 예산실장이 이따 가신다고 하니까.....

예산실 전통이 예결위만 상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재위도 상대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일영 위원장님이 회의 열릴 때마다 예산실장 찾을 거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몇 년 전에 처음 기재위에 왔을 때 예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기재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정부조직법, 법령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태년 위원** 전통이 예결위만 상대해요.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위원회에 예산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법령상. 그런데 전통인지 관례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태년 위원** 관례야, 관례. 그래야 골치가 덜 아프거든. 한 군데 상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군데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도 해야지요. 저는 계속 찾을 겁니다.

○**이인선 위원** 정일영 위원장님이 있는 한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부총리께서 오시는데 저희 1급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어제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자는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조금만 계시다가 가서 일하시면 되고 합리적으로 합시다.

다음 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한국은행이나 KDI, 통계청, 산업부, 금융위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됐습니다.

이런 부대의견이 채택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6억 중에 2억 73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소통 실적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데이터 중복을 예방하고 사업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좋습니다. 수용이라는 게 주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태년 위원 수용 여부는 지금 미리 기재부하고 다 합의 본 거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합의는 안 봤는데 하여튼 그 리스트는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수용할 거면 설명을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통과, 통과되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짧게라도…… 제목은 봐야지, 그래도.

○김태년 위원 제목만 이야기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그리고 정부는 수용, 우리는 말 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16페이지, 1번부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입니다.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에 대해서 반복적인 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다음에 17쪽,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에서 예산편성·집행의 계획성 및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그다음 18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에서 유사 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3개의 국이 갖고 있는 사업이 조금씩 다른 내용, 실제로 내용상으로 완전히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제, 인구위기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경제구조개혁전략은 연금, 의료, 노동시장,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성장전략은 당연히 신성장 분야별로 양자, 바이오, 이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정부 측 의견 받아들이지요.

○김태년 위원 다른 거긴 한데 다 연결되어 있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 19쪽, 기후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걸로?

○소위원장 정일영 예, 없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상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편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용.

그다음 20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쪽,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세부항목에서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확대 및 기금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등 배출권거래 활성화와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만 이소영 의원이 유상할당 비율의 수치를 좀 명시했습니다. 지금 20% 이상으로 상향하라는 이소영 의원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쓰는 거는 운용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을 하되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20% 수치는 빼고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페이지입니다.

기금예수금, 공자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과 관련해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공자기금 예수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22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에서 관련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23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페이지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24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세부사업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하는 용도 건물의 유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25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 25페이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특구 미지정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와 같은 전액 불용에 대해서 특구 모집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은 주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26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세부사업에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김태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써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자리전환지원금은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위원 수요가 없어서? 기재부가 발굴을 못 했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부랑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쪽에서 발굴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실제로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에……

○소위원장 정일영 누가 설명할래요? 담당 국장이신가?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주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탄소중립 전환사업이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낮고요. 그래서 산업부랑 고용부랑 계속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그 부분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게 아마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탄소 전환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년 위원 낮은 게 아니고 여력이 없는 거지요, 여력이.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관심도가 낮다고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러니까 인력도, 만약에 전환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9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내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릴 게 냉·난방기기를 교환할 때 똑같은 걸로 교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효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담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타 회계로 이관 이런 건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이 어렵다. 그럴 것도 같네.

다른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 명칭 자체가 대응으로만 돼 있어서, 기후대응이 있고 기후적응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응의 측면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적응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 아니에요?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는 취지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후대응기금 안에 보면 대응 쪽이 있고 완화하는 적응 쪽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같이 중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관리를 기재부가 해야 되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 자체는 기재부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데 지금 기금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보시고, 또 이런 내용은 기후특위에서도 똑같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것은 불수용.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0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서 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를 주의해야 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이 분류를 주의 대신에 제도개선으로 좀 경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

1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세부사업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 30페이지 1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0페이지입니다.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 세부사업에서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을 수용하는 거지.

1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세부사업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및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고국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2페이지, 국고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서면회의 중심으로 본회의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3페이지입니다.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는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나뉘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 상환은 다음 분기에 상환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일에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두 번째는 국고금 운용수익이 국고금 관리법 34조에 따라서 세출예산 외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재정법 17조 예산총계주의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한국은행하고 상환일을 일치시키는 제도개선 사항

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라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고금 관리법상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앞부분만 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의견들, 그렇게 하실까요?

○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5페이지입니다.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세부사업에서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와 적절한 경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태호 위원님이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주셔 가지고요, 이것은 부대의견보다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예.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6페이지입니다.

공용재산취득사업 총괄 부분에서 공용재산취득사업의 집행률 제고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회 헌정회관 신축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뒤에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월을 할 때 별도 지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했다라는, 그래서 국가재정법 72조를 위배했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집행이 0이기 때문에 집행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것을 건건이 다 심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 지출행위 없이 국가재정법 위반에 따른……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 2번은 주의야, 제도개선이야? 주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여기서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아니,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그렇게 나가자고, 빨리빨리.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3번.

제목만 얘기하시고 정부 얘기하고, 그러면 다 결정 죽죽죽 되는 것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별도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하시자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걸 협의하시고, 우리가 지금 제목이라도 봐야 되니까 제목 말해 주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한 건 한 건 하니까 자꾸 강요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2번에서 국회 헌정회관 신축은 별도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거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채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 원인행위가 있는 게……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좌우간 시정요구 주의로 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국고국장입니다.

한 30건 개별사업을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 지적이 잘못된 것도 있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그냥 한 건씩 죽죽 다 보고 싶다니까. 자꾸 왜 딴 얘기들 해, 시간 가는데. 위원장이 얘기하면 그냥 듣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2번은 끝난 것 아니야. 2번 얘기하는데 3·4번 뒤의 얘기 하지 말고. 2번, 정부 측 받아들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3번.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3번은 저기……

○소위원장 정일영 3번 수용이에요 아니에요, 정부?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사안 중에서 일부 잘못 지적된 게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면서 협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잘못됐다고?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사례 중에 잘못된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적사항이 잘못됐어요. 지출행위가 있는데 없다고 지적한 게……

○소위원장 정일영 지적은 알아서 수정하시고.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그러면 수용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적은 의원 마음이지, 의원이 지적했는데. 지적을 고치려고 그래?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천하람 위원이 지적한 것 아니야? 지적한 것 놔두면 되겠네.

○김태년 위원 지적사항은 아무도 못 고쳐.

○소위원장 정일영 맞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못 고치는데요, 지적사항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위반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잘못된 거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팩트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전문위원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번.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사례 중에서 좀 빼야 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가만있어.

○김태년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자꾸 그냥…… 한꺼번에 30건을 어떻게 하자고.

시정요구 주의, 받아들일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문구 그대로 괜찮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괜찮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수용.

4번.

비슷한 사례라는 것 아니야, 전부 다?

이것도 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소위원장 정일영 정리도 안 됐네. 빨리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 놓고.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이것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하여튼 시정요구 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소관 기관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는 그냥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이 참…… 그것만 얘기해요. 받아들일 거면 넘어가고 안 받아들일 거면 논의를 하고.

4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가재정법 준수하도록 할 것’ 수용합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 수용하면 되고.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번은 다른 유형입니다. 5번은 비축토지매입 사업에서 국고금 관리법 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 시정 사항, 첫 번째 꼭지랑 두 번째 꼭지

는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개 다 한꺼번에 시정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시정하는 거지요? 오케이?

수용.

6번, 주의로 돼 있네. 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기재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7번, 세네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시정하는 걸로.

8번, 법무부 검찰청 취득사업 집행 부진 시정 이것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

9번,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집행 부진 시정.

다 잘하라는 이야기네, 시정 사항이.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위원장님, 이 사례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하지 말고 그냥 딱 이것만 얘기해요, 9번.

자꾸 우물우물하지 말고, 수용이면 안 하고.

○박홍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정요구를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실 것은 아마 요구사항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여기서 지적이, 이 사례가 지금 팩트파인딩(fact finding)이 안 된 것도 있고 팩트파인딩을 해 보니까 지적이 되면 안 되는데 지적이 된 게 있고 지금 섞여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전체적으로는 수용을 하는데 입법조사관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원인행위가 된 것은 다 제외하면서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보니까 기재부 안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국고국……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지적이 어제저녁에 백몇 건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오늘 새벽에 나와 가지고 모든 걸 다 팩트파인딩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한 것까지만 보니까 원인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 없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고.

○김태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새벽에 들어왔다니까.

○박성훈 위원 이것은 좀 뒤로 미루시지요.

○박홍근 위원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건 한 건만, 정리가 돼 있다면 하고 죽죽죽죽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나중에 모아서 거기서 얘기한 걸 하나의 의견으로 붙여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보니까 건건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나 지금 못 해.

○박홍근 위원 한 장짜리로 정리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정리하게.

○소위원장 정일영 몇 번까지 있지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63페이지까지입니다. 63페이지고 64페이지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걸 점심때까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속개할 때 주십시오, 일괄 처리하게.

육십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신축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들어가는 게 27번, 63쪽까지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63쪽까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등등이 64쪽, 28번부터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64쪽은 새로 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4쪽입니다.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인데요. 여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는데 해경에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걸로 계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예산이 생각한 예산보다 적게 반영이 돼서 계약을 다시 변경하는 계약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하고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29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9번하고 30번도 아까와 마찬가지 동일한 문제고요. 그래서 팩트 확인을……

○소위원장 정일영 같이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3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는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인데요.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원래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에 집행했고 대신에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비 사용과 그다음에 예약시스템 구축을 자산관리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자산관리공사가 자체계정으로 지출한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환급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책임 규명 관련된 부분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환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환급은 하겠다, 그런데 책임 규명은 뺀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요? 환급하는데 왜 책임 규명은 빼지요? 이해가 안 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지금 실무자까지 이슈가 걸려서……

○소위원장 정일영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실무자……

○박성훈 위원 책임 규명은 너무 표현이 강하고 또 실무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는……

○소위원장 정일영 책임 규명 하면 징계까지도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잘해 보자고 만든 연수원인데 하는 과정에서 책임 규명까지 따라오면……

○소위원장 정일영 마음이 약해지네요.

위원님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7페이지입니다.

정책연수원 통합판사 건립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준수해서 통합판사 건립을 추진하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김태년 위원 수용 못 할 게 없지, 법 지켜라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주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공자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액 편성 시 편성해야 될 방폐기금 상환원금 4200억하고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해야 될 원금 5670억 원을 누락해서 계획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시정요구사항과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번은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공자기금이 반환해야 될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만기 연장해서, 첫 번째는 사실 재회수를 하면 국회 기금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재예탁을 안 하고 만기 연장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였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금을 만기 연장하는 것은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요. 하지만 법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라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는 첫 번째 지적을 삭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도 대안 문구를 저희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수금 만기 연장을 지양하고’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으로, 앞부분에도 이미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수정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1페이지입니다.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에서 내부거래 사업들의 세부사업명이 어디로 예수·예탁하는지 특별회계·기금 명칭이 안 나와서 어디로 기금을 예탁할지에 대한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도 저희가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칸막이를 칠 경우에 공자기금 운용의 효율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관련 예산안을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공자기금의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으로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팬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2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 부분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 부적절 및 과도한 계획 액 편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재정정책국,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재정정책국의 유사 사업, 제목을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세 가지 세부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4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주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저희가 지적을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요. 왜냐하면 현재 매년 중기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5년으로 하고 매년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해마다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주기를 3~5년으로 하라는 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서요.

○박홍근 위원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그거를 매년 하는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잘못 이해했네, 천하람 위원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훈 위원 저는 기재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삭제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대안으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충실한 분석 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지적을 잘못한 거니까 그냥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삭제? 불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대 주시면 더 좋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세부사업에서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에서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7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세부사업에서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의 적정 연구용역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시정요구유형이 부대의견인데 이거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정태호 의원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재정관리국 소관,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가회계제도운영 세부사업에서 국가재무제표가 연례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오류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9페이지,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만들다가 그게 관리가 오히려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세부사업을 뚫은 프로그램별로 제도개선 해서 운영 중인데 이 지적사항은 다시 옛날로, 프로그램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세부사업별로 하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안으로 첫 번째 있는 시정요구사항 앞부분을 '1 세부사업 1 성과지표 원칙을 수립하고'를 지우고 '재정성과정보를 추가하는 등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라고 수정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0페이지입니다.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개선 및 공정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에서 재정집행관리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2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세부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수요예측 미흡 사유 규명 및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획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수요예측이 미흡한 사유를 규명하고'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떠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것도 부대의견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제도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다음, 공공정책국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정원, 총수입액, 자산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일부 정원을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오케이.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번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정 유보가 된 기관이 총 201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지정이 되었는지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가 비공개돼서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미지정할 경우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미지정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지정할 때 검토되는 거와 관련해서 공운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준화를 하거나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기에 높낮이도 매우 다르고 또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도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철회…….

차관님, 그런데 이게 계속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려고 많이 로비를 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왜냐하면 공공기관 지정되면 여러 가지, 국회의 뭐도 있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졌다라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정요구를 안 받아들이신다고 하지 말고 좀 더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년 위원 왜 지정 안 했는지 사유를 국회에다 보고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공공정책국장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공공정책국장님.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일단 사유를 제출을 하는데요. 사유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너무 소규모 기관이라든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유를 국회에다 제출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그리고 또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 유보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합작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도 좀 있고 해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까지, 그것도 사유가 된다 하면……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추진 과정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앉아서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안방이 아닌데.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이 얘기하고……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담당 제도기획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국장이 막히면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김태년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시정요구 이것 이대로 못할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한 거구먼.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그런데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 경영정보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게 되면……

○김태년 위원 경영정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매각 그게 있고 지분이 일부 매각이 되어서 정부 지분이 줄어든다 하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포함이 안 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유로 대상이 아님.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여기 위원들이 시정요구한 데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고시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에 맞으면 공공기관 지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아까 주무 부처, 주무 기관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언제 주무 부처, 주무 기관 그리 존중해 줬나, 별로 안 해 주고 그냥 해 버렸지. 그렇잖아. 그러면 공공기관 요건 충족했으면 그냥 지정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 줘야지, 공시를 하든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그게 뭐가 어렵대?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해서 모두 지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포함이 되는데 공공기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또 과학기술계 출연연 같은 경우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 됐을 거 아니야. 이유 없이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이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유를 보고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면 지정 요건에다가 그런 기관들은 뺀다고 하든지.

○박성훈 위원 담당 과장 설명 좀 들어 보고……

○소위원장 정일영 담당 과장님 일어나서 직위하고, 한번 설명을 하세요.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오정윤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가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사유를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제시하는 사유가 워낙 해마다 다양한 경우도 있고, 그게 워낙 다양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또 보면 구조조정 아니면 지분 매각, 합작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법적 지위가 변동될 거다라는 사유로 어떤 기관을 지정 제외를 했다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사실 시장에도 정보가 나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 산업 업종 기관 이런 데서, 그 부처에서 굉장히

히 저희한테 사정을, 추진 과정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모든 정부 정책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산업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외부에 이런 이유로 공개했다고, 공개도 하지 말아 달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한은도 얘기하셨지만 금감원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지정 요건이 돼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또 지정을 안 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과장님, 됐어요. 미안한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한국은행하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이해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국회에 보고 못 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앉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고 저러고 또 주무 부처하고 협의하고 등등 이게 대단히 복잡하고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지정은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지정 요건을 투명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한국은행처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든지 그걸 투명하게 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일일이 주무 부처하고 해 가지고 이 기관은 되네, 안 되네 맨날 찾아오게 만들고 협의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예외되는 건 예외 기관이 어디다 딱 정리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행정을 하면 되지.

그렇게 시정요구 정리를 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이거는 꽤 중요한 이슈도 될 수 있으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소위원장 정일영 일반적인 얘기인데, 차관님이…… 여기 특별한 얘기도 없구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문구를 저희가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듬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박홍근 위원 지정의 결정 단위는 어딥니까? 공운위입니까? 공운위에서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공운위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공운위가 있는데 공운위 위에 공공정책국이 있으니까.

○박홍근 위원 아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편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알겠어요.

○김태년 위원 12시 넘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김태년 위원 12시 넘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네요.

이것 다 끝내려고 했는데……

○박성훈 위원 문구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오전에 했던 것을 정리하셨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국유재산관리기금 중에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한 장짜리 리스트를 보시면요.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다 수용 곤란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고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연번 2번부터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잘못 지적되는……

○김태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고요. 이렇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수용 곤란, 여기 없는 것은 다 수용.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님이 얘기한 의견이 수용 곤란하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것만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이다.

○김태년 위원 나머지는 다 수용.

○소위원장 정일영 이 페이지에 죽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수용이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집행 부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주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또 별지를 봐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예비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정리했고 예산실에서도 예비비 시정요구사항은 의견이 없는 걸로 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비비가 어디 있어?

○이인선 위원 여기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은 집어넣었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및 집행 가능성 등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내역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할 것.

위원님들 의견.

○이인선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이 말을 넣자는 말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오케이.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원안에서는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미지정된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원안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안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부 안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김태년 위원 진짜 말 어렵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놨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적사항 중에 앞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지정을 유보하는 경우에 합리적 판단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앞부분은 기재부가 받는 거고요, 판단 기준 수립하는 것은 받는 거고 미지정 사유를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일을 먼저 하려면 앞부분부터 해야 된 다음에 뒤로 나가는 거니까 앞부분에서 먼저 제도 방안을 검토해서 그것을 갖고 좀 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인선 위원 공공기관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먼저 기준을 만들고…… 기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고요, 마련하고 그 미지정한 사유를 제출하는 게 원안입니다.
- **김태년 위원** 원안으로 합시다.
- **소위원장 정일영** 충족하였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기관별 미지정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것. 원안이 더 확실하기는 합니다.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이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김태년 위원** 말이 5분도 안 돼서 바뀌어 버려?
-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국장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냥 제출하면 되고.
- **이인선 위원** 소관 상임위라는 게 어디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재위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기재위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미지정 기관 자체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지정 사유까지……
-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사유가 바로 앞에 있잖아.
- **김태년 위원** 미지정하는 기관은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뭐 하러 제출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사유가 궁금한 거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그 말이 바로 앞에 있어요. ‘충족하였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그 판단 기준이 미지정 사유지 뭐, 그렇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건데?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그러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 **소위원장 정일영** 검토할 것은 안 한다는 소리고.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번만 검토하게 해 주시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왜 이렇게 이것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큰일도 아니고.
- **김태년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미지정을 했으면 그 정도는 기재위 보고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관계 부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과장님, 그냥 계세요. 지금은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이야기한 게 합리적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그 미지정 사유에 관련해서 제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 **소위원장 정일영** 검토할 것은 안 된다니까요. 검토할 것은 어느 세월에 검토해요, 검토만 하다 끝난다니까.
-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미지정 사유를…… 아니, 수립하면 그게 사유인데요. 그렇잖아요?
- **이인선 위원** 미지정 사유를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할 건데. 크게 상관없잖아요.
- **소위원장 정일영** 공공기관 지정을 매년 하나요?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매년 초에 합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매년 연초에?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1월에.

○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하고서 제출해요.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비밀이 있나요?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그러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정도로……

○ 김태년 위원 뭘 관계 부처에서……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왜냐하면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 자체를.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요 그냥 합니다, 결정.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 원안으로.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8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과다한 수의계약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이 수행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7페이지 4번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다음, 5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87페이지 5번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문료가 타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공운위 자문료는 35만 원이고 기재부 내 타 위원회 자문료는 10만~15만 원이므로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깎겠다는 건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자문료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 이인선 위원 적정 수준으로 알아서 감액……

○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인선 위원 알아서 적정.

○소위원장 정일영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형평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외평.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8페이지입니다.

외평기금 기타이자상환 세부사업에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KIC에 위탁한 그 대가를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 항목이 기타이자상환 항목으로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기타이자상환이라는 항목에서 수수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상환에서 KIC의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율이 있는데 그 수수료율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에 대해서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0페이지, 기타이자상환에 대해서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타이자상환에 대해서 정부는 파생거래지급이자와 같이 모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호한 설명 대신에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번, 외평기금에서 세수결손 대응 시 외평기금 활용을, 24년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련자를 징계하자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평기금 43.5조 원의 조기상환은 당초 국회의 승인된 계획대로, 저희가 의결된 대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사유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세수결손 때 외평기금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지적은 그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물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활용을 했었지요? 외평기금 4조~6조.....

실제 얼마 썼나요? 4조 썼나요?

새 정부 들어서서 환율이 좀 안정됐는데 그때 환율이 어려울 때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작년 이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작년, 작년에 세수결손 때 기재부에서 보고한 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씀하신 43.5조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이것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아는데, 연관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그다음에 세수결손, 저희가 세수 보전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외평기금에서 4조 원을, 공자기금에서 받을 돈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해서 4조 원을 일반회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조기상환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미수령으로 쓴 겁니다, 미수령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돌려서 쓴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43.....

○소위원장 정일영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외평기금 세수결손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본 거고.

어쨌든 이거는 징계는 아니다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국회안대로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회안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경제국 소관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2페이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세부사업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시 잉여 재원이 한 4000억 정도 있는데요 잉여 재원을 고려해서 출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3페이지, 똑같은…… 동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이 있는데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 특별계정 내에 귀속시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4페이지,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입니다.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기재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정하고 관련 담당자의 교육 강화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오기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정요구사항 중에 결산서상의 기재 오류를 정정하고라고 했는데 이미 결산서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할 대상이 없고요. 25년에는 이게 아예 성인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재할 방법도 없어서 그 부분만 빼 주시면……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구를 수정하지요. 어때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삭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혹시 그 유형을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게 여성 사업 대상자 1만 2000명 정도 집행된 것으로 오류가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것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개발금융국 소관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5페이지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 세부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재부가 국제기구에 대한 자체 고용휴직은 25명이고 인사혁신처 통합 고용휴직은 19명, 총 44명인데요. 고용휴직제도에 있어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기재부가 올리지 않고 있어 가지고 휴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실무경험과 휴직결과보고서를 좀 더 활용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게시 부분은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은 ‘고용휴직 전문지식·실무경험과 휴직결과보고서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홈페이지 게시는 안 되나 보지요? 이것 하도록 돼 있다가 아까 수석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권고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권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권고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할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는 좀 어렵다 그 얘기인가 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좀 더 활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떤 십니까,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님, 오케이?

○**이인선 위원** 예, 그대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제도개선 이렇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대외협력기금 사업진행컨설팅 세부사업에서 사업 선실시 후 형식적 컨설팅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 안의 문구 중에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시’ 그다음에 있는 ‘선실시·후보완 형태의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매우’ 이 부분만 빼주시면 나머지 내용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빼는 게 ‘선실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요, ‘매우’까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매우’까지.

○**소위원장 정일영** ‘매우’까지, 이걸 뺀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수정 표현, 제도개선.

1번 복권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7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서 근로자햇살론의 서민금융 지원 기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다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8페이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세부사업에서 사업 계획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원스톱.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99페이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에서 사업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제도개선, 부대의견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예, 따르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2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0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세부사업에서 사업 예산 중 홍보성 비용 예산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3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1페이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에서 사무실 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무역협회 코엑스로 사무실을 옮겼다가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이사를하게 됐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무역협회가 1년쯤 지나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 나가 달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나간 건데 변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문구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뭐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무실 조성 시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2페이지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계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국세수입, 세제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세제실 소관은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이고 국세수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국세수입 세수 오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이고요.

먼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국회에 조기 보고한 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둘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수입 전망 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 오차 문제를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수납률이 저조한 소득세 신고분, 관세, 종합부동산세의 수납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일단 두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에 '기획재정부 수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획재정부가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으로 수정해 주시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에 앞부분에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있는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국회에 조기에 보고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은 오늘 저희가 오전에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국회하고 충실히 협의하자'라는 문구로 이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구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홍근 위원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이렇게 오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오전에 그렇게 정리를……

○소위원장 정일영 세제실장님, 국장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 총괄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총괄국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총괄국장님,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을 떠나서 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뭐 한두 풀도 아니고 61조, 53조, 거의 90조가 넘는…… 아니,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올해는 잘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감액 경정해 주셔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이 많이 경정한 게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0조 4000억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지난번에 10조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반기에 문제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하반기는 짚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 모델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모델을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바꾸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맨날 AI, AI,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AI를 붙이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해 보니까요, 범인세 부분 보니까 AI를 넣었더니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졌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추계할 때 그걸 활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리고 그 세수추계 심의회를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걸 리뷰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같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지, 그때는 많이 거뒀는데 또 지난 정부 때는 적게 걷어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한번 오버하게 되면 그게 약간 한두 해 더 가는데 그거를 지속적인 추세로 오인을 해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모델이 나왔어요, 세수추계 새 모델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내년도 세입 전망할 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세 측면에서는 조금 추계 오차를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난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한 8월쯤에 합니다. 8월쯤에 하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손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21년, 22년에 세수가 엄청 좋았습니다. 오버슈팅한 걸 베이스로 23년, 24년 세입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오차가 생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차가 생겨서 결손이 좀 생겼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무튼 정확히 잘하시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이 문구대로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제안한 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제안한 대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입니다, 주의 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박홍근 위원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속 지적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래서 올해 세제개편 발표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5년간 4.6조 정도 감면을 정비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거기도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일몰기한 연장은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렇지요. 일몰계약 종료한 게 한 7건 되고 축소한 게 9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신에 농어민이나 서민들에 대한 감면은 일몰 연장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줄여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마 세제개편 논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세지출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소위원장 정일영 총괄국장님, 계속 세제실에 계셨어요, 총괄국 오기 전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계속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총괄국장이 세제실장 됐지요, 작년에? 올해인가?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올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세제실장의 직전 보직이 총괄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같이 했구나. 알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정지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병기되고 있지 않아서 유사·중복 지출의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통합적으로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세제실하고 예산실은 이렇게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지요, 내부적으로도?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4번.

○전문위원 정지은 조세지출 수혜자 구분 및 귀착정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명확히 지정되는 보조금과 달리 조세지출은 그 수혜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귀착정보를 소득분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하도록 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 대안을 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더 설명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제안드리는 대안 문구는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에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귀착정보를 소득분위별로……’ 쪽 같습니다만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라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검토하고 강구하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안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5번.

○전문위원 정지은 5번입니다.

현재 조세지출 관리제도인 국세감면율 한도제, 예비타당성 평가제, 의무심층 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국가 세입·세출결산서에 조세지출 내역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조세지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 및 의무심층 평가제 등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 세입·세출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 조세지출결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세지출에 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앞부분에 ‘여러 가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게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를 국가결산서랑 같이 내라는 건데요. 국가결산서는 5월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세지출 예산·결산서는 세수가 다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종소세가 마감되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낼 생각이고요.

사실 작년에 부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올해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각 기재위 의원실에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여 조세지출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1번.

○전문위원 정지은 세제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34건 중 총 3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원칙,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 기능 제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유형은 제도 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를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로 수정을 원하고요. 나머지 2개 공개와 관련된 게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공개를 하겠습니다. ‘모두 공개할 것’은 좀……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앞부분 좋은데 그 불가피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

○소위원장 정일영 노력이 꼭 들어가야 돼요?

○박홍근 위원 불가피한 말이 들어갔으면 뒤에 굳이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공개할 것으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불가피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제도개선하는 걸로.

○전문위원 정지은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전문위원 정지은 2번입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성과 평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2020년도 결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도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성과지표가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 시 합리적 조세지출 관리와 개선을 위한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오히려 동 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설정을 제외한 것은 국회의 평가와 지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에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부분 설명 과정 중에 ‘중간에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제외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여기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 설명한 대로 한 프로그램, 한 성과지표 이것 때문에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마일드하게 고쳐 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뭐뭐뭐와 개선을 위하여’ 하고 이 반복되는 부분을 어겼다는 부분만 들어내고 바로 이어서 ‘동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줄여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팬찮은 안 같은데, 김태년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정해서.

3번.

○전문위원 정지은 3번입니다.

조세개혁추진단의 운영 예산이 과다 불용되고 있어서 사업 유지 및 존속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에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집행실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가 부진하므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사업 집행이 부진해서 좀 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실 때 ‘사업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부진하므로’ 이렇게만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말이 그 말이구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비비로 썼던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지은 2023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3년 예비비였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건 24년에 운용된 정상적인……

○소위원장 정일영 24년 거는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4번.

○전문위원 정지은 부적정한 관서운영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수용비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의 집행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집행지침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특근매식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근매식비 사용에 있어서 정규 근무시간을 위배해서 집행한 사례가 총 금액 기준으로 8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구체적인 사유 기재 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 특근매식비 예산을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하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부적정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앞부분에 감액 편성하라는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야근할 때 저녁을 먹는 내용인데요. 세제실 직원들이 나갈 시간도 없어 가지고 구내에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구내 식권을 사려고 하면 낮에 사야 됩니다, 일과 중에, 밤에는 식권을 팔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낮에 사서 그걸 갖고 밤에 구내식당을 가는데 시간이 낮이다 보니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준수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까지 저희가 수용하고요. 다만 그 뒤에 부분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이라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해 버리면 굽어요? 식권을 언제 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부분인데요 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김태년 위원 밥은 먹고 일을 해야지.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 김태년 위원님이 상당히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감액까지만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 감액까지만.

○김태년 위원 먹어야 일을 하지. 그러면 저녁에 식권을 팔든가.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러면 감액까지만. 김태년 위원님이 특별히 우리 기재부 직원들 배고플까 봐……

‘임이자 위원(검토보고 p210)’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페이지……

○전문위원 정지은 예,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네요.

그려면 기재부 것 다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또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부분에 세수결손 관련돼서 징계 요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류하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 아까 이거 하다가 말았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징계를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징계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부분에 보면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징계를 받으면 어느 국의 누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냥 빼요, 징계 빼. 징계 빼고 해.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주의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좋습니다. 주의도 좋고……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아까 주의로 나는 이미 정리된 걸로 봤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두 번째가 주의로 정리된 거고요. 첫 번째는 징계를 빼고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소위원장 정일영 조치할 것?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주의할 것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노력할 것.

○소위원장 정일영 조치든 주의든 수석님이 알아서 정리하시지요. 뭐 징계까지 할 건 없고.

그러면 일단 기재부 소관은 다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문구 조정만 남아 있는 거니까.

○박홍근 위원 이것 아까 제가 없을 때……

○소위원장 정일영 예, 국유재산관리기금.

○박홍근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설명은 됐는데 다만 문구만 하나, 65페이지 있잖아요. 이것 내가 국고국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소는 됐고.

그래서 29번 '기획재정부는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이게 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유관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지금 유관 부처라고 하는 게 국세청하고 그 다음에 캠코도 마찬가지예요, 캠코도. 이미 이쪽의 절차는 밟아졌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관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이렇게 한번 넣어 주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받을 수 있다라면 그냥 받으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29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고국장이랑 협의해서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이것은 위원장님께 맡기는 걸로.

○이인선 위원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관 기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30번은 갑자기 왜 동대구가 나와.

○이인선 위원 동대구가 나왔으니까. 이인선, 동대구니까. 여기도 아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가능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반영해 주시고.

이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방에서 금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의를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정부 측하고 합의, 동의까지 받았어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

○ 소위원장 정일영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합의가 됐어. 감액 그것 좀 정리하고 그러다가 예비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갑자기 정부 측에서 증액을 못 받겠다, 받겠다 해 놓고서 나중에 또 못 받겠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좋다, 증액은 일단 넘고 예비비 감액을 과감하게 그때 50%를, 2조 4000억을 정리해 버렸는데 그래서 의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게 비상계엄까지 죽 연결이 됐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의할 때 정부 측에서 동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태년 위원 기준 변경.

○ 소위원장 정일영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사항들을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미 합의가 된 것, 동의된 거니까.

○ 김태년 위원 노후도 뭐 있잖아요. 그 기준을 변경했거든.

○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 보십시오. 작년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 박홍근 위원 자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 국고국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박홍근 위원 예산실에서 다 그것 보고 있어요, 전달해 가지고? 좀 챙겨 주시지요. 그 사안들은 여야가 그때 다 합의했던 거니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기재부하고는 다 된 거지요? 그러면 가져도 되는 거지요, 수석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의결은 나중에 합니까?

○ 소위원장 정일영 의결은 내일 11시에, 정부도 자구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하시고, 지금 4개 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기재부 끝났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구 수정이 있으므로 추후 소위에서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심사자료 제2권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국세청 차장 최재봉 기본적으로 수용입니다만 의견이 주의, 제도개선으로 나뉘는데 주의로 좀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주의가 더 센 것 아니에요?

○ 국세청 차장 최재봉 그런데 제도개선 할 사항은, 올해 예산이 또 1300만 원 편성이 됐

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원장 정일영** 원하시면 주의로.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양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28만 장을 넘겼다가 56만 장을 했으면 예산이.....

○**국세청차장 최재봉**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제작을 하면 적정 재고가 연말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페이지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성과지표 목표치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과·징수자료수집비 세부사업입니다.

동 세부사업에 대해서 직원정보자료수집비 예산의 비목 변경 또는 증빙자료에 대해서 국회, 감사원에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이 부분은 저희가 이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게 위원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 다 보셨지만 정보수집 자료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하는 부분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정부구매카드 사용도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은 어렵고 다만 직원정보자료수집비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이런 쪽으로 바꿔 주시고 주의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김태년 위원** 이것 하급 직원들 그것 아니에요, 사실상?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작년 예산소위 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때 특경비 얘기 때 나왔던 그것 같은데?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그때 저희가 사례도 보여 드리고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구매카드로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문구를 잘 만들어 봐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저희가 그러면 문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크게 엄청 심각한 건 아니고 사정이 있으니까.

○**이인선 위원** 주의도 빼 달라고 하면 빼 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차장 최재봉 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하급 직원들 급여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액수까지. 그러면 이것 그냥 빼 버릴까요?
- 국세청차장 최재봉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일단 빼놓고 한번 볼까?
- 박홍근 위원 천하람 위원 괜찮겠어요? 소위원장님 책임지시지요, 빼고.
- 김태년 위원 우리 마음이지.
-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 위원회예요.
- 결리십니까, 박홍근 위원님?
- 박홍근 위원 아니요, 저는 결릴 것 없어요.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빼요.
- 국세청차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4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페이지입니다.
- 조사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조세범칙처분율이 편차가 심한데 이 편차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5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페이지, 압류재산공매 사업에서 체납 규모가 점차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누계 체납액은 24년 기준으로 110조 7300억 원에 달하고 24년 국제 세무행정 설문조사 결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체납 비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납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예, 대책을 강구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겠네요.
- 6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번, 압류재산공매 사업에서 장비구매 예산편성 및 집행을 개선 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 7번, 납세자.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페이지,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세부사업에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고 다만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로 위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하시고?

○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제도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첫 번째는 주의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님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로 통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이인선 위원 정부 측은?

○ 국세청차장 최재봉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국세청은 주의를 좋아하시네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첫 번째는 주의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될 것……

○ 박홍근 위원 아니, 그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에 첫째 줄.

○ 소위원장 정일영 같은데?

○ 박홍근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및 심의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게 같은 내용이지. 밑의 걸 지우면 되지, 시정요구사항을. 그렇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위엣것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그렇게……

○ 박홍근 위원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그러면 되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보고해야 된다는 게 주의로 하면 되겠어.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러면 보고를 합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해서 주의로.

8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세부사업에서 적정 규모의 청원심의회 예산편성 및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제도개선.

9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세부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위탁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10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비율 제고 및 청년층 부담을 완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저희가 수용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제도개선.

1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1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세법무국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인선 위원** 열심히 했지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할 일이 없네요, 보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1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3페이지,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등 집행 시 집행지침에 따라 주의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해서 올해부터 수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부터?

○**국세청차장 최재봉** 올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차장 최재봉** 지난해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 지적을 받아서요.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1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행정지원인력 운영 세부사업에서 청년인턴제도 운영상의 실제 사례를 개선하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청년인턴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고 싶어 하니까.

○**국세청차장 최재봉**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희 한계가 개별 납세정보를 그들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런 한계는 있는데 최대한 신고창구에 활용을 한다든지 신고방법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몇 명이나 청년인턴이 됐어요, 2024년도에?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재웅** 작년에 300명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본부에 있는 거예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재웅** 각 세무서에…… 주로 세무서에 있습니다.

○**국세청차장 최재봉** 올해는 본부에도 소수 하고 지방청에도 소수 하고 세무서에 대부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중도 퇴사가 너무 많긴 하네.

○**이인선 위원** 비용 가지고 인턴 한 사람들 나가면서 자기들이 느낀 점, 개선할 점…… 청년들 우리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그 부분도 올해는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한테 그만두는 사유도 저희가 좀 받아 보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왜 30%나 돼요? 뭐가 아주 어려운가 보지요? 불만 있나?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재웅**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내용이 알차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사이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MZ세대들이 그래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본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분석 좀 한 번씩…… 모니터링하세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잘하시고.

1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 과태료 세입 항목에서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16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 하단에 징계부가금 수납률 제고 및 징계 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이 부분은 현재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부가금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불납결손을 임의로 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 상황 관리를 또 별도로 하고 제도개선을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표현을 놔둬도 괜찮나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후관리하도록 개선할 것'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바꾸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개선할 것'. 개선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합시다.

○**국세청차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 변상금 수납률 제고 및 변상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이 부분도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 14억 9000만 원 중에 수납이 17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이중에 14억 6500만 원이 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해 1월에 소멸시효 완성돼서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건을 빼면 사실 이게 별로 건수도 많지 않고 불납결손율이 높다든지 그리고 징수율이 낮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여기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정할 것인데 괜찮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그렇게 표현을 바꾸고.

18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최재봉**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그러면 국세청은 다 정리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표현을 수정하는 것들이 좀 있고 제도개선,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세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구 수정이 있으므로 추후 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봉 차장님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가 되었으므로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료 17페이지, 조달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중 세계잉여금하고 과징금 항목에 대해서 예산 산정할 때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조달청장 백승보** 예.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페이지입니다.

조달청 사업의 성과관리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시정이에요, 제도개선이에요?

○**이인선 위원** 시정하겠다는 것 아니야? 성과관리 부진……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

알겠습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페이지입니다.

시설계약사업수입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계약수입 미수납 및 예산 과소계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수용.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 항목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하고 시정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시정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으로?

○조달청장 백승보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시정.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동 세부사업에 있어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 조정 등이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 지연이나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하게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동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부 측은 주의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이인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나라장터 사업이?

○조달청장 백승보 예,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을 이미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개통이 됐다는 거지요. 늦게, 지연은 됐지만.

○이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주의라 그랬지요, 아까?

○조달청장 백승보 예.

○소위원장 정일영 주의로 하고.

6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 사업으로.

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페이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이것 관련해서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구매국에서 말이에요, 앞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국, 예를 들어 전기전자구매과 이런 데서 전기전자제품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가격을 20% 깎아라 40% 깎아라 이렇게 합니까?

○조달청장 백승보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수요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 점검을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아니, 신고하기 전에 처음에 등록할 때 말이에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등록할 때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공무원들이 앓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제품은 얼마나 까 중소기업청 너희들은 더 싸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조달청장 백승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는 협상 기준가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협상 기준가격은 인수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래서 구매국이나 7번 공무직 운영 예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 국감에서도 내가 더 짚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달청의 기능을 다시 점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조달청 공무원들이 갑질을 많이 하네, 갑질. 어렵게 생산해 내는 중소기업이 나라장터에 올려 가지고 좀 팔려고 하는데 너희 이거 40% 가격 깎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줘. 안 깎아? 왜 안 깎아, 저쪽에서 깎는다는데?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면, 조달청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 그러지.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인데 자본주의인데, 어느 정도 퀄리티만 맞으면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나라장터를 운영해서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선택받을 수 있게 싸게 합리적인 가격을 올리도록 해 주고 그것만 잘,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담합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처벌해 버리고 그러면 되지. 일일이 조달청 구매국에서 그 수많은 제품들을 다 평가하고 직원 한 사람이 앓아 가지고 80개, 100개 기업을 가지고 다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조달청장 백승보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이 사안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직접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계속하겠지만, 따지고 질의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제 정부의 기능이 기업을 지원해 줘야 돼, 기업.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앓아 가지고 그냥 다 가격 올려라 내려라 간섭하고 기업 숫자가 너무 많다, 기계 만드는 데는 중소기업이 70개인데 20개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통제하고. 옛날에 박정희 시대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앓았으면 어떡해.

어쨌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좀 해서……

○조달청장 백승보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8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 세부항목입니다. 배상금 및 기타직보수 예산편성의 현실화 및 실무수습 인력 운영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9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국고금 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조달청장 백승보 예,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0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6페이지입니다.

회전자금전출금 관련해서 회전자금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1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7페이지입니다.

회전자금전출금 세부사업입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별 비축 목표 달성을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이것은 나중에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 잘해야 되는데……

1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8페이지입니다.

회전자금전출금 세부사업에서 민관 공동비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ETF 관련 구리 실물 보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용을 통해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장 백승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 참여도 제고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고 보관료 같은 경우도 비용 변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창고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 사용료에 관해서는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들은 얘기하시는 거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여기 시정요구사항 이 워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수용.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수용하시는 거로.

좋습니다.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수석님, 말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잠깐 금전적 특혜의 제공 소지에 대해서는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창고 보관료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인가요? 빼 달라는 건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삭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디?

○이인선 위원 ‘금전적 특혜’ 하는 이것을 좀 빼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창고료를 받는데 이게民間에 비하면 7.6% 수준에 달하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금전적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거고요.

조달청 입장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됐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맞으면 그 부분을 빼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조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후 소위에서 모두 모아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보 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어서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소관이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세청의 과태료 징수액이 5년간 급증을 한 반면에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 72.9%에서 2024년 13.9%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징수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태료 수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랑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택수색이라든지 금융자산 조사 그리고 다른 징수기관과의 합동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 부분들 수납률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년 위원 시정만 지우면 되는 거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좋습니다.

2번.

○전문위원 정지은 2번입니다.

과징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도 기준 49.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저조한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지금 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산업부랑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택수색이라든지 금융자산 조사 그리고 다른 징세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지요,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3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도 기준으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제도개선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체납관리단을 구성해서 올해 하반기에 한 10명 정도를 일용 임금을 활용해서, 채용해서 체납자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증액을 통한 운영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제대로 된 관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지요.

4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본예산 대비 83.6%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허료·수수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인데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액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주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청은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 시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시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렇게 된 이유가 202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광 형태의 변화라든지 송금액 수수료 축소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기재부에서 특허수수료 자체에 대한 감경 부분을 작년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됐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시정으로……

○관세청장 이명구 예, 시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시지요.

5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입니다.

체화물품의 적극적 공매를 통한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지만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그 체화물품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체화물품 45만 건 이상

이 되는데 그 95% 이상을 폐기하는 등 기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매된 사례가 1267건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세법에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 가능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도 극히 드문 실정이고 공매 관련 홍보가 부족하여 공매 참여율도 특정 소수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체화물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최소화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해 일실된 관세 및 제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각·공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측은 제도개선입니다.

대외홍보를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공매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제도개선으로.

전문위원님, 설명을 지적사항을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수석님이 하시는 것처럼 핵심 위주만.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해물품이라든지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고 있고 그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등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국민 홍보라든지 또 적발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판매 폐이지 차단을 요청한다든지 통관 단계에서 반입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예산 확충이라든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차단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건 나중에 국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7번입니다.

관세탈루심사의 내역사업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심사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AEO 공인업체로 공인이 되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인된 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 취소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세청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 시에 활용하여야 하나 그 지침에 위반해서 이 부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공인업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인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인심사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위탁계약을 실시하는 등 집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국회의 지적에 따라서 위탁사업 비목 자체를 일반용역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2024년도 차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집행지침을 미처 숙지를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약 종료 전에 실적 평가해서 미흡할 경우에는 개선 요구하고 차기 계약에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인선 위원 모니터링 잘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모니터링 잘하시라는 이인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8번.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다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알겠습니다.

다음,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 과세자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조치라든지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자료 제출 자연에 대해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관세법 개정을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포함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9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사항입니다.

관세청이 압수물품에 대해서 위탁보관을 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점

을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압수물품 관리용역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과 그리고 매각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환가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압수물품 위탁보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매각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가처분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보관 비용을 줄이고 국고 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수용 의견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경쟁입찰해야지요.

○이인선 위원 좀 더 신속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의계약은 안 좋아.

10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역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37.3%에 불과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업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수용 의견입니다.

사업 지역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1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사항입니다.

관세청의 2024년도 재무제표 내의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이 누락되어서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총 4억 7796만 원이 재무제표에 과소계상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재무제표상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감가상각을 누계액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단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2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은 관세활동비 사업과 관련해서 밀수단속, 관세탈루심사 등 그 업무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활동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등 다른 비목으로 설정하거나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저희 청은 현재와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 특정업무는 수사 그리고 관세조사, 통관검사, 부가자료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특정업무활동보고서 자체를 시스템에도 등재를 해서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운영비는 성격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한다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체를 빼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 빼 달라는 얘기야?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이걸 다?

○박홍근 위원 이게 아까 국세청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 저는 아까는 얘기를 안 했고 작년에 아마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처음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특경비 논의할 때부터 제가 그 스토리를 알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는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아까 국세청 때 얘기 안 했지만, 뭔가 새로운 비목이나 항목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위 직급 중심으로 해서 지원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약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이걸 편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앨 수가 없으니 이번에 국세청하고 똑같이 해주되,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경비는.

○이인선 위원 청에서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관세청장 이명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특정업무활동보고서 자체를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나름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시야 잘한 거 하나 갖고 왔겠지요.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아닙니다. 저희가 2300명 정도 지급받는 거에 대해서 분기의 활동 실적서를 시스템으로 등재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기획조정관님인가요?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예.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특정업무경비가 월 30만 원 내에서 이렇게……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최대 30만 원.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국세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청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장업무 많은 데들이. 이게 사실은 월급을, 보수를 편법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당국에서는 수십만 공무원들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양성화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양은 대단히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박홍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청이 결정할 일은 아닌데 예산 당국이 뭔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특정업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염밀히 정해서 이 업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이 웬만한 데는 경찰, 검찰 다 그냥 특정업무 경비로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행정업무를 하지 수사업무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돼 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의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현장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더 고생한 사람,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곱씹어도 제도가 잘못 설계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장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아까 예비비와 같이 향후에 예산 당국한테 이런 걸 한번 좀 고쳐라. 그래서 실제 더 고생하는 사람, 하위 직급들, 위험 부서 그다음에 조사업무 아니면 기밀이나 정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요.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위험한 일 이런 거 하던 분들한테 아마 지급이 되다가 폭넓게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반행정 업무하는 직원들도 좀 받는 것 같아요.

○ 관세청장 이명구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10년 전부터 감사원에서 매년 감사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총무적인 일,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다 저희들이 사무분장표를 제출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빼는, 말 그대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한 10년 전부터……

○ 소위원장 정일영 직급은 5급까지 하나요, 사무관? 그 이상도 받나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이상도 받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그 이상도 받아요? 국장들도 받아요, 그러면?

○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예, 받습니다. 받는데요……

○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들은 받으면 안 돼.

○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특정업무에 속하지 않는 직원들은 한 200명 정도는 저희가 지적 받아서……

○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도 받아요, 기획조정관도?

○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 박홍근 위원 개별적인 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는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 소위원장 정일영 미안합니다. 개인적 의견이니까……

- 박홍근 위원 저는 하여튼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 김태년 위원 하급 직원들 그게 아니구먼.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5급 이하로 하급직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받아야지.
- 김태년 위원 나는 그렇게 알았네.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받는다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하급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하급 직원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거지 상급 직원이라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
- 김태년 위원 상급 직원은 이거는 안 받아야지.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 잘라 버리면 되겠네요, 여기 위의 분들 거는.
- 박홍근 위원 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업무의 그런……
- 소위원장 정일영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요?
- 박홍근 위원 성격에 부합하면 당연히 직급과 무관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업무가 그런 취지에 실제 부합하냐, 남들이 봐도 같은 부처 안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고도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예우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서로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예산 당국이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요. 제가 직급을 얘기하는 거는 위에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정보활동이라든지 현장의 감사나 점검 이런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5급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고 2·3급들은 다 청장님 아니면 국장·과장들인데 하지는 않으시지요.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13번.

- 김태년 위원 생각이 달라지네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일단 이거는 빼는 걸로……
- 소위원장 정일영 예, 이거는 빼고.
- 박홍근 위원 회의 뒤에 한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이것도 사실은 각 개별 부처에다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관한테.
- 관세청장 이명구 예산 당국이지요.
- 박홍근 위원 예산 당국한테 한번 건의해 보세요.
-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고서에 한 패러그래프를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특정업무경비를 표현을 잘해 가지고, 말하자면 제도의 취지에 안 맞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 박홍근 위원 예.
-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고 이것은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 관세청이 사전에 편성되지 않은 고위공무원 국외교육을 원래 비목인 국외교육여비가 아닌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세관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체 이용을 하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연 말에 다시 또 다른 사업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시 세목 조정을 해서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예산지침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14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연평균 11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리고 권고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에 관한 심의 실적을 제고하고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15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사업입니다.

송무수행비용지원 사업인데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작성되고 있지 않고 특히 소송 대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패소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송무수행비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패소율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현재도 내부 성과지표로 패소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외용으로도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운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넘어가시지요.

아, 끝났네요.

관세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후 소위에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구 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할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첫 번째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용 상품권 등 상품권 관련 예산이 총 202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상품권 관련 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하나는 징계 사안으로 통계청 상품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한편 상품권 구매와 배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상품권 관련 여러 세부사업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는 일부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상품권 관리 소홀 문제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징계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징계를 시정요구를 해 놓으면 징계를 예단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통계청장 안형준 예.

○박홍근 위원 그동안 이게 한 번도 지적이 없었어요, 국회에서?

○통계청장 안형준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이 아니라 조사답례품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조금 짧은 기간이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돼 있지만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입찰이 되든지 유찰이 되든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이 28개인데 그중에 25개는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정도 빠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침이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지침은 있는데 성격이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좀 더 올려서 강력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연례적으로 재고가 많다, 수의계약이 많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에 응답하면 주려고 하는 상품권이지요? 그런 건가요?

○통계청장 안형준 202억 중에서도 198억은 통계에 응답하면 주려는 상품권이고 4억 정도는 자체 내부에서 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답례품과 관련된 것들은 엄격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4억 정도는 내부에서 상품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 **이인선 위원** 내부에서 문제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그러네요?
- **통계청장 안형준** 예,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 이번에 지적이 된 겁니다.
- **이인선 위원**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 **소위원장 정일영** 잘못을 했네요.
-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가 제도개선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도 하고 필요하면 정도에 따라서 징계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징계를 예단하고서 감사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이인선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하라 하지요.
- **소위원장 정일영**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문책 등의 향후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통계청장 안형준** 예.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책할 것 있으면 문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지은** 유형을 이 부분은 그러면……
- **통계청장 안형준** 그렇게 정리하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징계는 빼고 제도개선……
- **전문위원 정지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 **소위원장 정일영** 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 **전문위원 정지은** 그러면 앞부분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유형은 시정으로.
- **전문위원 정지은**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합시다.
- 2번.
- **전문위원 정지은** 2번입니다.
-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이행률이 낮고 언론 지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컨설팅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 그다음 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성과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수시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통계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3번.
-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이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가 2023년도부터 매년 반복이 되어 오고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역통계협의회 행사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

산안 편성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4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이 일반연구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전용을 통해서 공공요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집행 근거, 예산의 과부족 사유, 집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이유·근거·경과에 대해서 소명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5번.

○전문위원 정지은 통계데이터센터가 지금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당 이용자 수가 일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편의와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의 복잡한 자료 반출 절차와 제한된 데이터 범위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관련 내용을 합리화해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6번.

○전문위원 정지은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조사 불응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외국인 사망자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통계가 없고 근로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청은 외국인 사망자 원인 등 외국인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통계작성 사업이고 감사원에서 통계청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사안감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 작성·공표에 대한 부당 관여·처리 문제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은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결과 지적된 통계 작성·공표 업무 부당 관여 및 부적정 처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9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경제총조사 사업 중에서 해외자료 목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가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등 국외출장훈련경비로 집행이 되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청은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을 지양하고 국외출장경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는 수용을 하는데요. 시정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결과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통계청장 안형준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10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태블릿PC를 취득을 할 때 렌털 및 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전량 구매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청은 태블릿PC 취득 시 렌털·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통계청 예산으로 타 부처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2만 1000대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통계청장 안형준 120억인데요, 정확하게 2만 9000대입니다. 2만 9000대인데 나중에 조사 후에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1만 7000대를 사용하고요, 6000대는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00대 정도가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용처를 지금 각 부처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조사가 마무리되니까요 그때까지 남은 6000대에 대한 용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것을 렌털이나 리스로 하면……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가 렌털, 작년에 기재부랑 얘기를 했는데 구매를 했을 때하고 렌털 했을 때하고 그 가격 차이가 딱 9%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사후에 쓸 수 있는 것은 구매를 하고 사후에 안 쓰는 부분은 리스를 하면 좋은데 9%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구매를 하는 게 예산 절감에 제일 맞다고 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처를 찾는 겁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사후 사용처에 대한 예상도 미리 조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장 안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24년이고 사후에 쓸 때는 26년 2월이다 보니까 1년 반 이상 차이가 나서 각 부처 입장에서도 바로 쓴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11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이인선 위원 이것은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1번.

○전문위원 정지은 통계조사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계조사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그 사업실적이 답례품과는 무관한 사업체 경상조사 5종 전자조사율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청은 통계조사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 답례품 선호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사업실적을 답례품 관련 지표로 변경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2번.

○전문위원 정지은 12번부터 17번까지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일괄해서, 17번까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내용은 동일하게 특정업무경비로서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증빙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다 이것도 제도개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다 빼야 되나?

○박홍근 위원 일단 똑같이 적용하면, 다른 부처랑 같이 동일하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서는 다 없애되, 삭제를 하되 대신 전반적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그러면 17번까지는 일괄해서 빼고.....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 18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일단 그것 그렇게 하더라도 고위직은 안 받는 것으로.....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는 5급 이하만 받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요? 기관마다 달라?

○통계청장 안형준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처하고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돈이고요. 예컨대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 한 3년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이 나거나 하면 경조사 비용 같은 것을 줘서 나중에 응답을 조사하려고, 그런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5급 이하만 하더라고.

○김태년 위원 관세청이 좀 불량하구먼.

○소위원장 정일영 불량하네.

18번 남았나요? 18번.

○전문위원 정지은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몽골 등 3개 사업의 사업 추진 계획을, ODA 사업을 계획했는데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 사업의 국외여비 부족분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을 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파라과이 출장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콜롬비아 현지점검은 미실시하는 등 원래 확정한 예산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계청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자의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청장님.

○통계청장 안형준 수용하는데요, 시정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집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

문에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위원장 정일영 예.

다른 위원님들 통계청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구 수정이 있으므로 추후 소위에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준 청장을 비롯한 통계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심사를 다 마쳤고요. 내일 11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중요한 표결, 투표 끝나고서 11시면 올라오실 수 있을 테니까 내일 11시에……

○ 이인선 위원 우리 전체회의는?

○ 소위원장 정일영 2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사항은 향후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의결하도록 그렇게 행정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태년 박성훈 박홍근 이인선 정일영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 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

국세청

차장 최재봉

기획조정관 김재웅

조사국장 민주원

관세청

청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이진희

조달청

청장 백승보

차장직무대리 이형식

통계청

청장 안형준

차장직무대리 이명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